주요 정책토론

본고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1998년 12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던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

일 시: 1998. 12. 18. (금) 13:40~17:4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좌 장: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주 제: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

발 표: 전도석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김한수 롯데제과 연구분석실장
민상기 건국대학교 교수
신현호 변호사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재 테크원 기술개발부장
조생래 부산 푸드뱅크장
최대웅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도국장
(가나다 순)

1. 기본 시각

- 푸드뱅크는 남은 식품을 수거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체계로서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 푸드뱅크연합-광역 푸드뱅크-기초 푸드뱅크-단위 푸드뱅크』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저소득가정 등에 기탁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단위 푸드뱅크는 복지시설과 같이 수혜자가 됨.
- 푸드뱅크의 운영은 최소비용 원칙, 근거리 수령 원칙, 이웃동참유도 원칙, 기탁자 예우 원칙, 빈곤배려 원칙, 최적분배 원칙, 보관기간 최소화 원칙, 사랑의 지역공동체 조성 원칙, 취식자 책임 원칙, 그리고 책임·조화·협조의 원칙 등 10가지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음.
- 기탁식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식

품이 기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수혜자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계층임.

- 기탁자는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됨. 또한 1999년 1월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4조가 개정되어 기탁식품 전액에 대한 세금감면이 실시될 예정임.
- 각 56개 푸드뱅크에 『1377』이라는 전용전화를 1998년 9월 17일 개통하여 09:00~22:00까지 운영하고 있음. 이외 시간에도 착·발신장치가 되어 있으며, 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나 해당 푸드뱅크에서 조달하고 있음.
- 기탁에 따른 푸드뱅크의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기탁회원 관리와 홍보를 통한 기탁회원 및 기탁품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지원하였음. 각 관련서식에 의한 실적보고는 매월 전국푸드뱅크연합이 자체 수집한 실적을 직접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채널과 각 푸드뱅크가 관련 시·도에 보고한 실적이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음.
- 우리 나라는 1998년 1월에 처음 서울, 과천,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에 식품은행이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고, 10월부터 전국의 56개 지역에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가 각 시·군·구의 협조하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광역 푸드뱅크와 기초 푸드뱅크는 각 시·군·구의 협조하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이들을 총괄할 전국 푸드뱅크연합이 전국복지단체 중 시설수나 회원수, 그리고 사업수행정도가 타 복지단체에 비해 미미한 특정 복지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사무실 유지비, 기탁품 수송 차량 유지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며, 기존 시설을 근거로 푸드뱅크가

설치되었지만 전담인력 없이 대부분 기존사업의 인력이 푸드뱅크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음.

- 푸드뱅크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 및 지방단위의 홍보활동이 있어야 하나 식품기탁자가 푸드뱅크에 관한 인식이 있는 몇몇 대기업 식품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유관단체의 협조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개인 기탁자를 유인하기 위한 교통비 감면 등의 유인책도 외국과 달리 개발되어 있지 않음.
-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식품은 정상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분배를 위한 수송, 보관 등의 단계에서 적정보관온도 유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냉장·냉동용 식품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형편임.
- 푸드뱅크 사업의 시작이 법적 근거나 제도하에 실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심 및 합의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법적 뒷받침이 미흡함.

3.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설정

가. 정착방안

- 푸드뱅크의 운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확산시키고, 활용 가능한 잉여식품의 폐기 방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재활용 확대에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푸드뱅크의 역할,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정립, 둘째, 기탁자와 수혜자의 확대 방안 마련, 셋째,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집·보관 및 분배를 실현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어야 함.
- 푸드뱅크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시 존재하는 장해요인(관련단체의 협조 미흡, 수혜대상자의 한계성,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한계 등)과 촉진요인(관련 법 및 제도의 개정, 사회안전망 내의 식품지원, 관련제도와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등을 고려하여 한

국형 푸드뱅크 사업의 조기 정착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표성을 갖는 전국연합 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
- 기탁품 종류의 다양화 및 기탁품의 종류와 수혜대상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달 방법을 달리하는 분배형태의 검토
- 기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인책 마련
- 자원봉사자 등 민간 부문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탁자나 기탁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
- 공공기관이 푸드뱅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 지원
- 사업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
- 푸드뱅크간 정보망의 구축

나.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개발

- 단기형(기초형): 1998년 시범사업후 확대 실시된 형태로 1999년에 사업의 완전 정착을 목적으로 함.
- 중기형(발전형): 선진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형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단계로 관과 민의 공동 운영, 상근직원의 근무, 생활용품까지 기탁품 확대, 개인 및 한시적 대상자까지의 수혜대상자 확대, 저온유통시스템의 구비, 광역 푸드뱅크까지의 정보망 구축 등을 마련함.
- 장기형(선진형):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완전히 마련된 형태로 총괄조직은 국제교류에 의한 식량지원 등의 세계적 사업을 기획하고, 저온유통시스템의 완비로 신선식품류까지 기탁과 분배가 가능하며,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게 됨. 그리고 분배방식도 다양화하여 무료지원, 판매, 무료급식 등을 실시토록 하며, 푸드뱅크간 정보망이 완전 구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